

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(안)

2024. 7.

교 육 부 [인재정책실]

목 차

│. 추진 배경1	
□. 의과대학 학사운영 추진체계 2	2
Ⅲ.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⋯⋯⋯⋯⋯ 3	}
□V. 학생 지원 및 소통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

Ⅰ. 추진배경

□ 필요성

- 의과대학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'24.2월부터 동맹휴학, 수업거부 등 의대생 집단행동이 지속되면서 의과대학 학사운영 차질 발생
-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지속되어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는 경우,
 의료인력 수급차질, 교육여건 악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 예견
 - ※ 정부는 '**보건의료 재난**' 위기경보를 '**경계**'에서 '**심각**' 단계로 **상향 결정**(2.22.) 후 중대본을 설치하여 대응·복구 조치 중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 및 14조)
- 학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독려하고,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마련 필요
 - ※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대정부 건의문('24.6.12.)
 - 3.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따른 의대생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하여, 대학이 기존 학사 운영의 틀에 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여 수업결손을 보충함으로써 유급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대학을 지원한다.

□ 목적

-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, 의료인력 양성
 교육을 정상화하여 의료인력 수급 차질 예방
- **대학들이** 대학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**활용**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 규정 및 **사례**를 제시하여 대학별 조속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추진 경과

- **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대학별 제출**(~5.10), 대학별 사례공유(5.17.)
- **의총협**,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마련 등 **대정부 건의**(6.12)
- 교육부,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(6.14, 브리핑)
- **대학관계자 의견수렴:** 제1차(6.19), 제2차(6.26.), 교무처장 회의(7.8.)
- **의총협**,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**의견수렴**(6.28.)

Ⅱ. 의과대학 학사운영 추진체계

1 추진체계 마련

□ ^{가칭}의과대학 학사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

- 각 대학별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주요 시항을 심의·결정하는 위원회 등을 설치,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 권고
 - 학사운영, 교육과정, 내규 개정 등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위원회, 규정개정위원회 등과 연계·협력하여 신속한 조치 추진
- 의과대학의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(변경)계획, 학사일정 변경, 학제개편 등에 대한 심의·결정 기능 수행

□ 협업체계 구축·활용

-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('의총협') 등을 통해 학사운영
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활용하고 공동 적용방안 검토
- 교양과목 등 강의 개설, 일시적인 강의실 확보 등을 위해 **대학 내,** 대학 간 (권역별·온라인 협업 등)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및 사례 공유

2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

- ① 의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 하되, 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적용 가능
- ② 2024학년도 의과대학 수업복귀 학생을 위한 긴급조치인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,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적용함으로써 복귀 여건 조성 및 수업복귀 학생의 불안감 최소화
- ③ 학칙 및 학칙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 등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학내 협의를 통해 개정 추진
 - 규정 등 개정 시,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**공익적 목적**(의료인력 수급 등), 수익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범위(소급 등) 판단

Ⅲ.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

- ❖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복귀 학생의 이수·진급 지원
-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되, '24학년도 1학기를 정상 이수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

1 수업일수 조정

- **학교의 수업일수**(매 학년도 30주 이상)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감축 운영 가능
-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 운영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

제11조(수업일수)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<u>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.</u>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<u>학칙으로 정하는</u> <u>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</u>

제14조(학점당 이수시간)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, <u>매 학기 최소 15시간</u> 이상으로 한다.

2 탄력적 수업운영

□ 수업운영 방식

- 교육과정, 교과목의 학습량 등을 고려하여 **야간·원격수업 및** 주말 등 활용 가능하며, 필요 시 전면 워격수업 가능
- 학교별 여건 및 수업특성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운영한 강의 중 일부를 대면수업으로 보충하거나 기존 원격수업 녹화영상 등을 활용 가능

「고등교육법」

- 제22조(수업 등)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주간수업, 야간</u> 수업, 계절수업,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<u>원격수업</u>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- ② 학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<u>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</u>,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□ 출결 관리

- 대학 내 규정 등을 통해 이수요건, 절차, 대체·보완 방안 등의 기준을 정하고 대학별 여건에 따라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
- 학내 구성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되, 수업 불참 관련 **강요행위 정황** 등을 **종합적**으로 **고려**하여 운영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

제14조(학점당 이수시간) ② <u>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</u>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3 성적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

□ 수강신청 취소·철회

- 수강 중인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, 당초의 수강 신청을 취소·철회하고 재수강 지원
 - ※ 필요 시 수강신청 취소·철회 기간 적용 예외 등을 위한 근거 마련 조치 병행

□ 성적 부여 및 유급 특례

- 의과대학 학사운영 차질을 고려하여 **대학별 방안 마련·적용**이 가능 하도록 **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 말까지 변경** 등 신**속 조치 추진**
-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"학기 단위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"하는 조치 등을 통해 1학기 학습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가 부여
 - 현재 일부 학년을 학년제로 운영하는 대학은 전체 학년으로 확대 적용하고, 학년제 미운영 대학에서는 내규 개정 등을 통해 도입
 - ※ **학기제 및 학년제는 학칙 및 의과대학 내규 등에 따라 진행**하되, 현재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과대학 내규 등을 **조속히 개정하여 적용**

학년제 운영규정(예시)

제0조(학년, 교육과정) 학사운영은 학기제로 한다. 단, 의과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4.0.0.> 제0조(성적평가) 의학과의 성적평가는 학년 단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4.0.0.>

학사일정의 지속적인 변경·조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재시험(실습)
 기회 부여하고, 성적사정회의 등을 통해 교육과정 이수 판단

-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인해 한 학년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, 2024학년도에 한하여 유급(진급) 관련 한시적 특례조치 마련 및 적용(유급 판단시기, 대상, 기준 등)
 - ※ 예 (기존) 학기 성적기준으로 학기말 유급 판단 ⇒ (특례 적용) 2024학년도에 한하여 학년 말까지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학년 말 종합 성적평정 할 수 있도록 변경

유급적용 특례(예시)

제0조 ② 제1항의 규정(유급 관련 규정)에도 불구하고 총(학)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유급 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. <신설 2024.0.0.>

부 칙(2024.0.0.)

- ② (유급 구제에 관한 특례조치) 2024학년도에 한하여 의예과, 의학과 재학생은 제0조에도 불구하고 유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학교별 여건에 따라 **I학점 제도** 등을 **도입**하여 **성적평가 기간 연장**
 - 2024학년도 의대 학사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한 학년도 등 **일정 기간 내**에 학습 결손을 보충·이수할 수 있도록 **I학점 제도 유연화 조치**

* 예 I (Incomplete)학점 제도 운영 현황

- ▶ (정의)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완(I)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- ▶ (평가기간) 성적평가 마감일까지 임시적으로 I학점으로 두고 최종성적 부여 유보 → 특정 기간 내에 보완 결과를 반영하여 성적 입력
- ▶ (평가방법) 기간 내 성적 미부여 시 F처리, 성적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 등

□ 의예과 1학년 유급 예방 조치

-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신입생 증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, 복귀학생들이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 마련
 - ※ (기본방향) 의예과 1학년이 일부 과목에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,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

< 의예과 대상 유급 제도 운영 현황 >

- [유형 ①]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판단 가능한 경우 예 당해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0.0미만인자, 당해 학기에 전공필수 과목 성적 중 F학점이 있는 자
- [유형 ②] 학년 말에 유급 여부를 판단 가능한 경우 예 당해 학년의 성적평점 평균이 0.0미만인자
- [유형 ③] 유급 요건이 아닌 진급 요건을 두는 경우 ⑨ 의예과 평점 평균 0.0 이상인 자, 전공 필수과목 등을 이수한 자는 의학과로 진학 가능

- 유형 ①, ② 대학들은 2024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학사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, 유급 제도 운영 방식 변경 필요(의예과 1학년 유급 적용 방식 → 의학과 진급 요건 적용으로 변경)

[의학과 진급요건 변경 예시]

개정 전	개정 후		
제0조(유급) <u>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</u> 이 다	제0조(의학과 진급요건) 의예과에서 <u>의학과</u>		
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	<u>로의 진급 요건</u> 은 다음과 같다		
급처분을 할 수 있다	1. 성적평점 : 의예과 평량 평균 0.0 이상		
1. 당해 학기의 성적평점의 평균이 0.0미만	2. 취득학점 : 총 00학점 이상 등		
2. 당해 학기의 전공과목에 한 과목 이상	제0조(유급) <u>의학과 학생</u> 이 다음 각 호의		
과락이 있는 경우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분을		
	할 수 있다		

- 학교별 여건에 따라 의예과 1학년 유급적용 방식을 의학과 진급요건 으로 변경 불가 시, 2024학년도 한시적 유급 특례조치* 마련
 - * 유급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(학)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 적용 제외 등
- 의예과 1학년 미복귀로 인한 차년도 교육여건 악화 방지를 위해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할 수 있는 운영계획 등 마련 ※ 예 예과 1학년 교과목에 대하여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등

4 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

□ 2024학년도 1학기 연장 및 다학기제 운영

- 2024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차질 및 학습결손 보충을 위해 **학년도** 및 학기를 전공·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 추진
 - 학사일정, 교육과정, 기 수강학생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'25학년도 정규학기(다학기제) 또는 계절학기 운영 여부 등 결정

「고등교육법」

제20조(학년도 등) ① 학교의 학년도(學年度)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

제10조(학기)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<u>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.</u> ② 제1항에 따른 <u>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,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</u> 달리 정할 수 있다.

【학기 운영 예시】

- ❖ 아래 유형은 학기 운영의 예시를 제시한 것으로, 아래 유형과 관계 없이 대학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학기 및 교육과정 운영 가능
- ① 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기간을 연장하여, 원격·보충수업 등을 통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하는 방안(예시①)
 - ※ 1학기와 2학기를 병행 운영하더라도 법정 수업일수(매 학년도 30주 이상)는 중복산정 불가 **(학기 운영 변경 예시①)**

	1학기	
2024학년도		2학기

- ② 2024학년도 1학기를 연장하여(예시. ~10월) 보완 수업기간을 확보하고,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(9~12월)보다 축소하여 운영하는 방안(예시②)
 - 2024학년도 수업기간이 부족한 경우, 2025학년도 이후 추가학기를 개설 하여 2024학년도 교육과정 중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

<학기 운영 변경 예시②>

2024학년도	1학기		2학기	
2025학년도	1학기	2학기		3학기

- ③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하되, 2학기를 1학기 학습결손 보충 목적으로 집중 운영하는 방안(예시③)
 - 1학기 성적처리 기한 연장 및 학년제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,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 운영 시 1학기 기 납부된 등록금 활용
 - ※ 단, 학년도 내에서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과정 중 일부를 2025학년도 등 상위 학년도와 연계하여 운영 가능

<학기 운영 변경 예시③>

2024학년도	1학기	2학기	3학기
-v-	·	_ , ,	9 1 1

□ 계절학기 운영

- (대학별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되),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별도의 (계절)학기 개설·운영 등 통해 2학기 시작 전후 재수강·보완 기회 제공
 - (계절)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상한 확대 등 조치와 병행 추진

□ 교육과정 개편(조정) 병행

- 학기 조정에 따라 **집중이수제^{*} 운영, 교육과정 조정** 등도 **함께 고려** * 학점 당 수업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업 기간을 15주보다 짧게 운영하는 제도
- 학교별 여건에 따라 **의예과 미수강 학점을 졸업 전까지 이수** 할 수 있도록 **유연화**
 - ※ 예 의예과 1학년 미이수 학점을 현행 의학과 1~4학년 정규·계절학기를 통해 분배
 - ※ [참고]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개정('24.2.20.)을 통해 통합 6년제 근거 마련 제25조(수업연한 등)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・한의과대학・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.
- 대학별 교육과정 중 유사·동일한 과목이 있는 경우 권역별 공동 과정 개설 운영, 원격강좌 공동 활용, 학점교류 등도 적극 적용

□ 의학과 4학년 실습수업 운영

- 1학기에 진행하지 못한 의학과 4학년 실습수업은 2024학년도 2학기에 보충·운영하도록 하고,
 - 2024학년도 2학기에 보완이 어려운 **일부 실습과정**에 대해서는 **2025** 학년도 계절학기 등을 통해 보완 추진
- 대학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의학과 4학년의 복귀 독려를 위해 2025년 의사 국가시험(실기) 추가 실시 적극 검토
 - ※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

[의사 국가시험 관련 현장 의견수렴 내용]

-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대정부 건의문('24.6.12.)
- 5. 정부는 수업 복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의료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한다.
- 의총협,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제출('24.6.28.)

본과 3~4학년 학생 복귀를 위해 국가고시 일정 조정 또는 별도 응시기회 부여가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

5 학습관리·지원 관련 사항

- 학생들이 **수업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부담**의 **완화**를 위해 **대학 내 필요한 조치 마련**(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보충수업, 학습자료제공 등)
- 긴급대응을 위한 **탄력적 학사운영 조치를 추진**하면서 학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, 각 대학은 **학생 졸업 시점까지 재이수** 기회 부여, 학습 모니터링, 상담 및 지도 등 관리 및 지원 계획 마련

6 등록금·장학금 관련 사항

□ 등록금

- 2024년 1학기를 연장하거나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운영하는 경우 2024년 1학기 기 납부된 등록금을 활용
 - 2024년 하반기 새로운 학기 시작하는 경우 학사 일정에 맞춰 등록금 징수
 - ※ 다학기제 운영 등 탄력적 학사 운영 시, 대학은 수업연한의 총 등록금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

□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

- 2024년 하반기, 1학기를 연장·보충하는 학기가 아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사 일정에 맞추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* 예정
 - *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, **재학생도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** 및 신청기간 추가 연장 검토
-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산출이 어려울 경우 직전 학기 성적 활용
 - 다만, 신·편입생 등 직전 학기 성적도 산출되지 않은 경우(학년제 적용 등) 성적 기준 미적용
 - ※ 다학기제 운영 등 탄력적 학사 운영 시, "국가장학금 Ⅱ유형" 우선 지원

-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요건* 검토 시, 의과대학 학사운영 차질 등으로 교내장학금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,
 각 대학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예정
 - * 등록금 동결·인하, 교내장학금 유지·확충
- 대학별 학기 시작일에 따라 등록금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우선 지원

7 주요 행정사항

-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2학기 등록기간을
 학년 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조치 실시
 - ※ 미등록 시 불이익(제적, 재입학 가능성 등)에 대하여는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안내
- 의학계열은 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정보공시 현장
 점검 시 자료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 예정
 - ※ 다만, 고등교육통계조사는 「통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기준일 변경, 수정일정 연기 등 불가
- 2024년 교연비 지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법령 및 가이드라인*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연비 수정계획 수립 가능
 * 「국립대학회계법」및 같은 법 시행규칙,「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가이드라인」
 - 의대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4년 교연비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감소할 경우 '25년 교연비 증액승인 검토
- 각 대학은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, 필요한 경우 규정 개정 등을
 포함하여 학교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신속히 추진
 - 탄력적 학사운영 사항은 학생 개인별로 안내하고, 개별 학생 상담 시 안내하는 등 학생 복귀 독려 과정에 적극 활용
- **탄력적 학사운영** 및 학생 복귀와 관련한 각 대학의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적극 검토

Ⅳ. 학생 소통 및 상담 지원

□ 학생 소통 및 안내

○ 모든 재학생이 개강연기, 수업운영 방식 변경 등 **학사운영 변경 사항**을 알 수 있도록 **학생 대표를 통한 전달 아닌 학생 개인별 안내 실시**

□ 개별 상담

-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적극 협력하여 ^{가칭}의대생복귀상담센터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담 추진(대면·비대면 활용)
 - ※ 개별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복귀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해소하고 향후 학사운영과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, 애로사항 수렴(⇒ 학생 상담내역 등을 기록으로 관리)
- 집단행동 강요 정황이 지속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**상담내용** 및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

상담 참고사항(예시)

- 수업복귀 시에는, 학업부담이나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대학이 지원 예정 ※ 의학과 4학년 복귀 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적극 검토
- **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향후 복학할 경우,**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교육여건이 악화 될 수 있음(특히, 저학년 불이익 집중)
- '24학년도 미이수 교과목은 추가 학습을 통해 이수해야 하므로 복귀 시점이 늦어질수록 학업부담 증가(예. 의예과 1학년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의학과 계절학기 등을 통해 이수)
- 정원증원과 연계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과 정부의 투자 예정

□ 학생 보호

- 집단행동 강요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 점검, 학생지도 실시 [집단행동 강요행위 사례]
 - ▶ 휴학계 제출 강요

- ▶ 온라인 수업 불출석 인증
- ▶ 수업참여 학생에 대한 공개사과 및 학생회 차원의 불이익 조치 등
- 교육부에서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행위 및 피해사례 접수를 위해 운영하는 '의과대학 학생 보호·신고센터' 안내
 - (신고번호) ① 010-2042-6093, ② 010-3632-6093
 - (신고메일) moemedi@korea.kr